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 지원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28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 지원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수현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2024. 8. 14.

다. 회 부 일: 2024. 8.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5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 지원(안 제51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1조(보조금) ① ----- ----- ----. <u>다만, 제5호의 경비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5. <u>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¹⁾.

한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2호에서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현재, 국가유산청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유산이 훼손된 경우 우선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원(국비 100%)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하고 있고, 일부 국가유산의 경우 재난 발생 당해연도에 보수정비사업(일반회계) 대상인 경우 사업내용을 보수에서 긴급복구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복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년도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풍수해, 지진, 화재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총 79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하여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

연도	화재	풍수해	지진	합계	주요 재난
2014	2	34	0	36	영동지역 폭설(2월)
2015	2	16	0	18	
2016	1	40	52	93	경주 지진(6월), 태풍 ‘차바’(10월)
2017	2	9	11	22	포항 지진(11월)
2018	1	24	0	25	태풍 ‘솔릭’(8월)
2019	1	85	0	86	태풍 ‘링링’(9월), 태풍 ‘타파’(9월), 태풍 ‘미탁’(10월)
2020	1	105	0	106	집중호우(7~8월), 태풍 ‘마이삭’(8월), 태풍 ‘하이선’(8월)
2021	6	40	1	47	태풍 ‘오마이스’, ‘찬투’(8~9월), 제주해역 지진(12월)
2022	6	148	0	154	충부지방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2023	8	117	0	125	장마철 집중호우(6~7월), 태풍 ‘카눈’(8월)
2024	3	74	3	80	부안 지진(6월), 장마철 집중호우(7월)
합계	33	692	67	792	

※ 자료: 국가유산청(2024. 8. 30.기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및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 개요]

구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
시행대상	국가지정(등록)유산	국가지정(등록)유산
사업내용	국가지정(등록유산) 보수정비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시 복구 지원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정률지원 (국비 70%~30%) *국가지정유산(70%), 국가등록유산(50%), 전시관 유지보수(30%)	지자체보조, 정률지원 (국비 100%)

* 자료: 국가유산청

최근 5년간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건수 대비 실제로 지원한 비율은 43.1%에 불과하여 피해 국가유산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추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A)	지자체 신청현황		지원현황		지원율 (C/B)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2019	4,106	55	7,292	41	4,106	56.3
2020	4,106	76	8,745	63	4,106	47.0
2021	4,106	75	8,544	47	4,106	48.1
2022	4,106	75	13,593	62	4,106	30.2
2023	4,061	72	11,902	71	4,061	34.1
평 균	4,097	71	10,015	57	4,097	43.1

* 자료: 국가유산청

개정안은 풍수해,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경우 초기 대응 및 신속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원형유지 및 추가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추가 훼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관련 동법 제51조제3항에서 보조금 지원 교부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대상도 제51조제3항에 추가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을 비용추계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보고 있고³⁾, 국가유산청은 법 개정시 최근 5년간의 국가유산 피해복구 신청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매년 5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참고2).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의 보조금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⁴⁾, 한정된 국가예산 상황을 고려

3)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하고 있다고 설명함.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보조금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동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조항을 근거로 재난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국비 100%)에서 지원 중이므로 별도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⁵⁾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국비 100%)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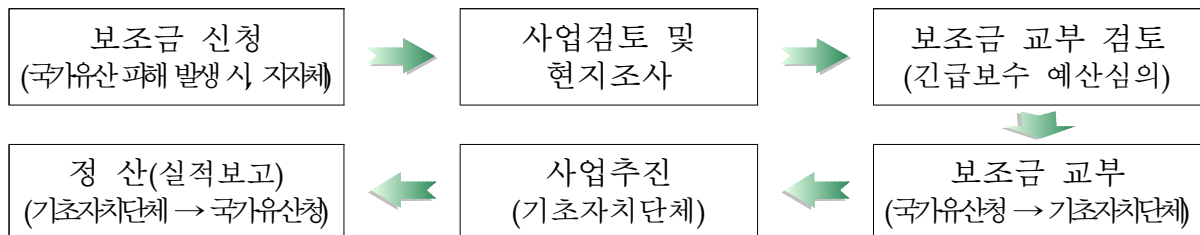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참고 1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발생 즉시 신속한 보수비 투입, 신속한 복구로 추가 훼손 방지 및 원형 보존
- 사업이력 : 2004 ~ 계속 / 매년 평균 60건 수준('23년 71건)
- 지원대상 : 국가지정·등록유산(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유산 포함)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기준

순 위	내 용
1순위	○ 풍수해 등 재난에 의해 훼손되어 보수가 긴급한 당해 국가지정·등록유산(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
2순위	○ 원형훼손 및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당해 국가지정·등록유산(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
3순위	○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국가지정·등록유산(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의 주변정비 ※ 주변정비는 당해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제반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

- 긴급보수사업을 신청(지자체)한 지원대상에 한하여, 관계전문가(문화유산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보수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 금액 등을 검토한 심의결과에 따라 교부

참고 2

법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 그간 지원실적

- 국가지정·등록유산(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비 100%)
- 지방지정유산(특별재난지역 내 복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국비 50%)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원금액	4,106	4,106	4,106	4,106	4,061	4,061
지원건수	41	63	47	62	71	41건 *8월말 기준

□ 향후 지원계획

- 피해액 추정 : 최근 5년간 신청 현황 고려 산정(5년 평균신청액 **10,015백만원**)

<최근 5년간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예산(A)	신청현황		지원현황		지원율 (C/B)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2019	4,106	55	7,292	41	4,106	56.3%
2020	4,106	76	8,745	63	4,106	47.0%
2021	4,106	75	8,544	47	4,106	48.1%
2022	4,106	75	13,593	62	4,106	30.2%
2023	4,061	72	11,902	71	4,061	34.1%
평 균	4,097	71	10,015	57	4,097	43.1%

- 향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지원금액	4,484	10,000	10,000	11,000	11,000	11,000
지원건수	55	70	70	70	70	70

참고 3

지정문화유산 현황

□ 국가지정유산

(단위: 건, 종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국보	342	348	350	354	358	359
보물	2,188	2,235	2,293	2,351	2,385	2,416
사적	513	519	521	526	531	535
명승	113	115	127	131	134	136
천연기념물	461	463	470	475	479	481
국가무형유산	146	149	153	155	160	160
국가민속문화유산	300	303	306	308	310	311
소계	4,063	4,132	4,220	4,300	4,357	4,398
국가등록문화유산	843	896	933	952	959	968
총계	4,906	5,028	5,153	5,252	5,316	5,366

□ 시·도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현황

1) 시·도지정유산 현황

(2024.8.31.기준) (단위: 건, 종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유형 문화유산	549	216	99	76	31	57	43	22	346	183	350	222	275	271	505	916	40	4,201
시도 무형유산	56	25	17	31	22	25	8	4	71	44	28	55	64	54	52	40	23	619
시도기념물 및 시도자연유산	40	52	20	62	24	47	45	11	187	81	138	169	135	200	156	272	128	1,767
시도민속 문화유산	35	19	6	3	9	2	2	-	14	4	20	28	36	43	153	21	82	477
소계	680	312	142	172	86	131	98	37	618	312	536	474	510	568	866	1,249	273	7,064

※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라 '시도기념물'이 '시도기념물(문화유산)'과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으로 종목 분리·변경되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및 정비 중에 있으므로 추후 행정절차 완료 후 통계자료 반영 예정

2) 문화·자연유산자료 현황

(2024.8.31.기준)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	83	128	66	26	31	63	34	16	193	148	96	313	160	251	585	704	10	2,907

※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라 '문화재자료'가 '문화유산자료(문화유산)'와 '자연유산자료(자연유산)'로 종목 분리·변경되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및 정비 중에 있으므로 추후 행정절차 완료 후 통계자료 반영 예정